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168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농촌지역의 도시화·공업화에 따라 관개용수 이외의 생활용수·공업용수등의 수요량 증가 및 생활오수, 축산·공단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에 따른 농촌용수량 부족 현상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 농촌용수를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수질을 관리함으로써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3조).
- 나.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내지 제11조).
- 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 라. 농촌용수의 사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5조).

제정조례안 : 별 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3. 7. 12. ~ 2003. 7. 31 (20일간)

참고사항 : 별첨

- 조례표준안(농림부)

안산시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5 규정에 의하여 시관내 농촌용수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용수구역”이라 함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3. 농촌용수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계획)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운영

②시장은 전항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연구기관, 학술단체 또는 기타 관련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항에 의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농촌용수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용수시설) ①시장은 농촌용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 및 필요한 대책 마련
- ②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의 설치)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안산시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촌용수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에 관한 사항
4. 농촌용수의 신규 공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농촌용수 관련 업무담당 과장, 농촌용수구역 관할 동장
2. 관할 저수지의 수리계장 또는 임원
3.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임·직원
4. 농촌용수 및 지표수(지하수)와 관련하여 경험과 학식이 있는 자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농촌용수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농촌용수 업무담당 실무자가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서기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사항 및 참석 위원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2조 (심의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과 관련된 주민, 이해관계인 및 기관(단체)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사용제한)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용수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에 의하여 농촌용수의 사용을 제한(정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기간·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농어촌진흥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목
	담당·팀장 직위·성명	농정담당 김응로
	담당자 성명·전화	임두희 (행정 2314)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 (농어촌용수계획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보전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 합리적인 이용 및 그 수질의 관리·보전등을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의 수립·추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의 설정·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5 (조례의 제정)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안의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의 이용·배분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운영·조작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용수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의 유지비용·관리비용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한 사항